

Type of the Paper (Article, Review, Case, Research Note, etc.)

ESG 공시기준별 중대성 평가 체계 비교 연구

Jae-eun Kim ¹

¹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ies, jekim@assist.ac.kr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the materiality assessment frameworks of three major ESG disclosure standards—GRI Standards (2021), ISSB (IFRS S1·S2), and CSRD/ESRS—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required to comply with multiple standards simultaneously. The analysis proceeds along four dimensions: the concept and purpose of materiality, assessment process and scope, stakeholder engagement structure, and linkage to disclosure item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three standards form a structural hierarchy in their materiality concepts—impact materiality (GRI), financial materiality (ISSB), and double materiality (CSRD/ESRS)—while exhibiting fundamental heterogeneity in assessment processes, stakeholder engagement logic, and disclosure linkage mechanisms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a single integrated process. Building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derives four theoretical propositions: impact materiality serves a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for multi-standard integration; GRI-based impact materiality assessment can only partially satisfy CSRD/ESRS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requirements; a single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cannot simultaneously fulfill all three standards; and disclosure integration should be designed with CSRD/ESRS as the anchor standard. These propositions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and offer practical guidance for Korean companies navigating the evolving international ESG disclosure landscape.

Keywords: ESG Disclosure, Materiality Assessment, Double Materiality, GRI, ISSB, CSRD/ESRS, Multiple Standards Compliance, Sustainability Reporting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5 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 수준을 넘어 점차 의무적 규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정도진, 2025; 금융위원회, 2023). 특히 2023 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S2 확정 발표, EU 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 그리고 한국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개초안 제시 등 일련의 제도적 움직임은 ESG 공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도진, 2025; 이용훈·홍철규, 2023).

이러한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시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가 부상하고 있다(Garst et al., 2022; 황성익, 2023). 중대성 평가란 기업이 수많은 ESG 이슈 중 어떤 항목을 공시해야 하는가를 판별하는 프로세스로, 공시의 질적 수준과 정보 유용성을 결정짓는 근간이 된다(Garst et al., 2022). 그런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ESG 공시기준인 GRI Standards, ISSB(IFRS S1·S2), CSRD/ESRS 는 중대성의 개념적 정의와 적용방식에 있어 상호 이질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어(Nobes, 2025; Mezzanotte, 2023; Garst et al., 2022), 기업 실무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정도진, 2025).

GRI 는 기업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에 주목하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ISSB 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을 각각 채택하고 있는 반면, EU의 CSRD/ESRS는 이 두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채택하고 있다(Nobes, 2025; Mezzanotte, 2023; Baumüller & Sopp, 2022). 이처럼 동일한 '중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기준별로 그 의미와 평가 방법이 상이하다는 사실은, 기업이 복수의 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혼란과 이행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Garst et al., 2022; Nobes, 2025; Oll et al., 2025).

국내의 경우 KSSB가 ISSB 기준을 근간으로 2026년 2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최종 확정함으로써(한국회계기준원, 2026), 공시 의무화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8 사업연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10조 원 이상으로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2026). 동시에 EU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들은 CSRD/ESRS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GRI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서 여전히 지배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한국거래소, 2025).

그러나 현실은 의무화 시계와 기업의 준비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국거래소(2025)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204개사 중 203개사(99.5%)가 GRI 기준을 활용하는 반면, ISSB 기준을 적용한 기업은 16개사에 불과하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는 기업 중 정량적 재무영향 분석을 수행한 기업은 18%,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기업은 33%에 그쳐, KSSB가 요구하는 재무적 중대성 기반 공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훈·홍철규(2023)가 실증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중대성 평가는 이슈 결정 프로세스 설명, 이해관계자 참여 등 외형적 요건 충족에는 높은 공시율을 보이는 반면, 계량적 평가와 영향의 시간, 범위, 공시 등 실질적 요건에서의 공시품질은 낮게 나타나, 공시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복수 기준 동시 이행 환경에서 중대성 평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외 연구는 주로 세 가지 흐름으로 수렴된다. 첫째, 개별 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정도진, 2025; Nobes, 2025), 둘째, 단일 기준 하에서 중대성 공시품질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실증하는 연구(이용훈·홍철규, 2023; 이용훈·홍철규, 2024; Padilla-Garrido et al., 2024), 셋째, 기준 간 이중 중대성 개념을 비교·분석하는 연구(Mezzanotte, 2023; 황성익, 2023)가 그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GRI·ISSB·CSRD/ESRS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 논리와 순서로 중대성 평가를 설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합한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이용훈·홍철규, 2023; Padilla-Garrido et al., 2024; Oll et al., 2025). 이 연구 공백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의 공백에 그치지 않으며, 복수 기준 앞에서 출발점조차 설정하지 못하는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1.1. 연구 목적 및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GRI·ISSB·CSRD/ESRS의 중대성 평가 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세 기준은 각기 상이한 철학적·목적론적 토대 위에서 중대성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분석 기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둘째, 구성된 분석틀에 따라 세 기준의 중대성 개념과 목적, 평가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공시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 기준 간 이질성과 상호운용성의 실제 양상을 규명하고, 복수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구조적 긴장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해명한다.

셋째,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KSSB(ISSB 기반) 의무 공시, CSRD/ESRS 간접 적용, GRI 자율 공시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통합적 중대성 평가 접근의 이론적 명제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규범 비교분석을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중대성 평가 체계의 이론적 기반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증 연구에 앞서 개념적 분석틀을 먼저 확립하는 문헌연구가 학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분석 대상은 GRI Standards(2021 년 개정판), IFRS S1·S2(2023 년 최종본), CSRD/ESRS(2023 년 EU 발효본)이며, KSSB 최종 공시기준(2026 년 2 월)은 보조적 참조 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초점은 세 기준의 중대성 평가 체계에 한정하며, 개별 기준의 공시 항목 전반에 대한 포괄적 비교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 중대성 개념의 이론적 계보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 장에서 네 가지 분석 차원에 따라 세 기준의 중대성 평가 체계를 비교·분석한다. 4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을 위한 이론적 명제와 시사점을 제시하며, 5 장에서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서술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대성 개념의 재무적 중대성

'중대성(Materiality)'의 개념적 기원은 재무회계에 있다. IASB(2018)는 IAS 1 및 IAS 8 의 개정을 통해, 정보의 누락·부정확한 기재·불투명한 기재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투자자·대출자·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중대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정보 수신자를 자본 제공자로 명확히 한정하고 재무적 영향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또는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으로 불린다(Nobes, 2025).

이 전통적 중대성 개념은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보고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시범위를 설정하는 이 논리 구조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관점으로 개념화되며, 이후 등장하는 영향 중대성 및 이중 중대성과의 대비 속에서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2 이해관계자 이론과 영향 중대성

재무적 중대성이 자본 제공자 중심의 단일 관점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비판은 ESG 공시영역에서 중대성 개념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이 분화의 핵심 이론적 토대는 두 가지 계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이다. Freeman(1984)은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지역사회·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기업행위가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인사이드-아웃(Inside-Out)' 효과-을 보고의 핵심기준으로 삼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GRI 는 이 계보를 계승하여 2021 년 개정 GRI 3 에서 기업활동이 경제·환경·사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중대성의 핵심 판별기준으로 명문화하였다(GRI, 2021).

둘째,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이다. Suchman(1995)에 따르면 조직의 정당성이란 사회적 규범·가치 체계 안에서 기업 행동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일반화된 인식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정당성 관리(legitimacy management)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는 GRI 방식의 영향 중대성 평가가 이해관계자 참여를 필수 요소로 강조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2.3 이중 중대성의 등장과 중대성 개념의 진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의 개념은 EU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2019년 기후 관련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CSRD 및 ESRS에서 의무적 평가 체계로 제도화되었다(Baumüller & Sopp, 2022). 이중 중대성은 영향 중대성(GRI의 '인사이드-아웃' 관점)과 재무적 중대성(ISSB의 '아웃사이드-인' 관점)을 OR 논리로 결합하여,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공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사회·환경 간의 양방향적 상호의존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중대성 개념으로 평가된다(Mezzanotte, 2023).

2.4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ESG 공시기준의 비교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aumüller & Sopp(2022)는 NFRD에서 CSRD에 이르는 유럽의 중대성 규제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중 중대성의 전면 도입이 기업에 상당한 해석 부담과 실무적 비용을 수반함을 강조하였다. Nobes(2025)는 중대성 개념의 장기적 계보를 추적하면서 GRI-ISSB-ESRS 간 핵심 개념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이 차이가 기업의 공시 범위와 내용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분석하였다. Adams et al.(2020)은 이중 중대성의 개념과 적용 쟁점을 정리하면서, 실무에서 기업들이 재무적 중대성을 우선시하고 영향 중대성 평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도진(2025)이 ISSB 기준의 재무적 중대성 편향이 회계정보 유용성에 미치는 한계를 분석하고, 단일 중대성 기반의 ISSB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해관계자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준 간 중대성 관점의 이질성이 개념적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대성 공시품질에 관한 연구도 주목된다. 이용훈·홍철규(2023)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공시항목과 연계하지 않는 형식적 경향을 실증하였고, 이용훈·홍철규(2024)는 Scope3 공시여부, 이중 중대성 채택, GRI 2021 기준 적용이 중대성 공시품질(MDQ)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Padilla-Garrido et al.(2024)은 스페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성 분석의 실무적용이 모호하고 이질적이며,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희소함을 지적하였다.

산업별 연구로는 이경창·이유경(2024)이 글로벌 철강사의 이중 중대성 평가 절차와 ESG 경영 전략이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계됨을 밝혔으며, 김승철(2025)은 국내외 항만공사의 중대성 평가 체계를 비교하여 국내 항만공기업에 적합한 ESG 지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별 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Baumüller & Sopp, 2022; Nobes, 2025; 정도진, 2025), 둘째, 단일 기준 하에서 중대성 공시품질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실증하는 연구(이용훈·홍철규, 2023; 이용훈·홍철규, 2024; Padilla-Garrido et al., 2024), 셋째, 산업별·기관 유형별 중대성 평가 적용을 비교하는 연구(이경창·이유경, 2024; 김승철, 2025)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세 연구 흐름에는 공통된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기준의 중대성 개념분석, 단일 기준 하의 공시품질 실증, 산업별 적용 비교에 집중한 나머지, 복수 기준의 동시 이행이라는 새로운 실무 맥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GRI-ISSB-CSRD/ESRS가 각기 상이한 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이 어떠한 접근 논리와 설계 순서로 복수 기준을 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명제는 국내외 문헌에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이용훈·홍철규, 2023; Padilla-Garrido et al., 2024; Oll et al., 2025). 본 연구는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향후 실증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연구 흐름	주요 연구	분석 대상 및 방법	핵심 기여	한계점
-------	-------	------------	-------	-----

① 개별 기준의 중대성 개념 분석	Baumüller & Sopp(2022)	EU 중대성 규제의 역사적 발전	이중 중대성 개념의 이론적 근거 및 등장 배경 규명	기업 관점의 실천적 접근 부재
	Nobes(2025)	GRI · ISSB · ESRS 중대성 개념 흐름	기준 간 중대성 개념 차이의 체계적 비교	단일 분석 측에 한정, 통합적 접근 미제시
	정도진(2025)	ISSB 기준의 회계정보 유용성	재무적 중대성 편향의 한계 논증	국내 단일 기준(ISSB) 관점에 한정
② 중대성 공시품질 실태 및 결정요인 실증	이용훈 · 홍철규(2023)	국내 ESG 보고서 콘텐츠 분석	중대성 공시 실태 분석 및 공시품질 측정지표(MDQ) 개발	단일 기준(GRI/ESRS) 적용, 복수 기준 대응 미분석
	이용훈 · 홍철규(2024)	기업환경 · 제도 · 재무 특성 회귀분석	기업 특성별 중대성 공시품질 결정요인 실증	단일 기준 한계 동일
	Padilla-Garrido et al.(2024)	스페인 IBEX 35 상장기업 GRI 보고서	중대성 공시 수준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 실무 적용의 모호성 · 이질성 지적	단일 기준(GRI), 단일 국가 맥락
③ 산업별 중대성 평가 적용	이경창 · 이유경(2024)	글로벌 3대 철강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비교	이중 중대성 평가 절차 · 과제 설정 · 전략 체계의 기업별 차이 규명	단일 산업 · 단일 기준에 한정
	김승철(2025)	국내외 항만공사 ESG 보고서 비교	국내 항만공기업 ESG 지표 개선 방향 제시	단일 기관 유형, 기준 간 비교 부재

3. ESG 공시기준별 중대성 평가 체계 비교 분석

3.1. 분석 프레임워크의 설정

세 기준의 중대성 평가 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 차원은 기준 간 의미 있는 차별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복수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의 실무적 판단 지점에 직접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중대성의 관점과 목적론적 차이는 기준 간 비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어떤 이해관계자를 정보 수신자로 삼는가에 따라 중대성의 범위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Nobes, 2025; Baumüller & Sopp, 2022). 둘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의 단계 구성과 판별 기준의 차이는 실무 적용의 모호성과 이질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공시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있다(Padilla-Garrido et al., 2024; 이용훈·홍철규, 2023).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은 중대성 평가의 정당성과 품질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적 요소로서, 참여 주체와 강제성 수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Garst et al., 2022). 넷째, 중대성 평가 결과와 공시 항목 간의 연계 구조는 형식적 수행과 실질적 공시 간의 괴리를 결정하는 제도적 변수로서(이용훈·홍철규, 2023), 복수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기준별 공시 연계 구조의 차이가 실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분석 차원을 설정한다. 첫째,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으로서 정보 수신자와 중대성 유형의 차이, 둘째,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로서 판별 절차와 단계 구성,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로서 참여 주체와 강제성 수준, 넷째, 공시 연계 구조로서 평가 결과와 공시 항목 간의 연결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이 네 차원은 중대성 평가의 철학적 토대에서 실행 체계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며, 기준 간 차이를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가 기업의 실무 설계에 어떠한 판단을 요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

표 2. 분석 프레임워크의 구성

분석 차원	세부 내용	분석의 초점	실무적 판단 지점	레퍼런스
①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중대성 유형, 정보 수신자, 근거 이론	기준별 철학적·목적론적 차이	기업이 어떤 중대성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Nobes(2025); Baumüller & Sopp(2022)
②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단계 구성, 판별 기준, 임계값 설정	기준별 절차적·방법론적 차이	기업이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평가를 설계해야 하는가	Padilla-Garrido et al.(2024); 이용훈·홍철규(2023)
③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참여 주체, 참여 방식, 강제성 수준	기준별 거버넌스 구조의 차이	기업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Garst et al.(2022); Suchman(1995)
④ 공시 연계 구조	평가 결과의 공시 전환 메커니즘	기준별 제도적 연결 구조의 차이	기업이 중복·충돌을 최소화하며 공시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용훈·홍철규(2023)

3.2. GRI Standards의 중대성 평가 체계

3.2.1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GRI Standards(2021년 개정)는 '영향 중대성'을 핵심원칙으로 채택한다. GRI 3에 따르면 중대주제란 기업이 경제·환경·사람(인권 포함)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정의되며(GRI, 2021), 주된 정보 수신자는 지역사회·종업원·소비자·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이다. 기업의 재무적 영향이 아닌 외부 세계에 대한 영향을 1차적 판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투자자 중심의 재무보고 패러다임과 구별된다.

GRI는 이해관계자 이론(Freeman, 1984)과 정당성 이론(Suchman, 1995)에 이론적 기반을 두며, 기업 활동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인사이드-아웃(Inside-Out)' 관점을 내재화하고 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 영향 중대성은 재무적 성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EU 공급망 규제나 인권실사 의무화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에게는 실질적 공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용훈·홍철규(2023)가 실증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 대부분이 GRI를 활용하면서도 영향 중대성의 실질적 내재화에는 미흡한 상황에서, 영향 중심의 중대성 관점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는가는 향후 공시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GRI Standards(2021)의 중대성 평가는 GRI 3에 따라 맥락 이해, 실제·잠재적 영향 식별, 중대성 평가, 우선순위 결정 및 보고의 4단계로 구성된다(GRI, 2021). 영향의 심각성(Severity)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판별기준으로 활용하며, 부정적 영향의 경우 심각성이 발생가능성에 우선한다. 심각성은 다시 규모(Scale)·범위(Scope)·회복불가능성(Irremediability)의 세 하위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GRI 2021 개정을 통해 중대성 매트릭스는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되었다. 판별의 초점이 이해관계자와 기업 양측의 중요도를 2차원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경제·환경·사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GRI, 2021). 그러나 단계 구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과 임계값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실무 적용에서 상당한 재량과 이질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있다(Padilla-Garrido et al., 2024; 이용훈·홍철규, 2023).

이러한 방법론적 불명확성은 복수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GRI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ISSB 나 CSRD/ESRS 의 평가절차와 연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판단 부담을 수반한다(Padilla-Garrido et al., 2024).

3.2.3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GRI 는 세 기준 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장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GRI 3 는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설문이나 형식적 협의를 넘어 실사(due diligence) 수준의 참여를 권고한다(GRI, 2021). 참여 주체는 종업원·지역사회·소비자·NGO 등 기업 활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집단으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주된 참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GRI 는 참여 방식과 강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다(Garst et al., 2022). 이 결과 기업마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다르고, 형식적 참여를 통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처리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이용훈·홍철규, 2023; Padilla-Garrido et al., 2024). 기업 입장에서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충분한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실무적 어려움으로 직결되며, 특히 ISSB 나 CSRD/ESRS 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별로 요구되는 참여 주체와 방식이 상이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Garst et al., 2022).

3.2.4 공시 연계 구조

GRI 에서 중대성 평가 결과는 중대 주제(Material Topics) 목록으로 집약되며, 이 목록이 보고서에 포함할 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직접적 근거가 된다. 기업은 중대 주제별로 해당 GRI Topic Standard 의 공시 요건을 적용하여 보고하며, GRI 콘텐츠 인덱스를 통해 중대 주제와 공시 항목 간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GRI, 2021).

그러나 이 연계 구조는 실무에서 충실히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이용훈·홍철규(2023)는 국내 기업들이 중대성 이슈 결정 프로세스 설명이나 이해관계자 참여 등 외형적 요건에서는 높은 공시율을 보이는 반면, 중대성 평가 결과를 실제 공시 항목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은 낮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Padilla-Garrido et al.(2024) 역시 중대성 분석의 실무 적용이 모호하고 이질적이며, 중대 주제와 실제 공시 항목 간의 연계가 일관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페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형식·실질 괴리는 중대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평가 자체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평가와 공시를 어떻게 일관되게 연결할 것인가가 GRI 활용 기업의 핵심 실무 과제임을 시사한다(이용훈·홍철규, 2023; Padilla-Garrido et al., 2024).

표 3. GRI Standards 중대성 평가 체계 분석 요약

분석 차원	핵심 내용	이론적 근거	기업 실무상 함의
①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영향 중대성: 기업이 경제·환경·사람에 미치는 실제·잠재적 영향 중심 4 단계(맥락이해→영향식별→중대성평가→	이해관계자 이론(Freeman, 1984); 정당성 이론(Suchman, 1995)	재무적 성과와 무관한 비재무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필요 → 공시 범위 광범위
②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우선순위 결정); 심각성(규모·범위·회복불가능성)과 발생가능성이 판별 기준; 매트릭스 불필요	GRI 3(2021)	단계 구성은 있으나 방법론·임계값 불명확 → 형식적 수행 위험, 기준 간 연계 판단 어려움(Padilla-Garrido et al., 2024; 이용훈·홍철규, 2023)
③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지역사회·종업원·NGO 등)	Garst et al.(2022)	참여 수준 기준 불명확 → 형식적 참여 유인 존재(이용훈·홍철규, 2023);

④ 공시 연계 구조	실질적 참여 요구; 자율적 방식, 강제 기준 없음	복수 기준 동시 대응 시 참여 설계 통합 어려움
	중대 주제-GRI Topic Standard 적용-GRI	이용훈·홍철규(2023);
	콘텐츠 인덱스 명시; 평가 결과가 공시 항목	Padilla-Garrido et
	결정의 직접 근거	al.(2024)
		외형적 공시율은 높으나 실질적 연계 수준 낮음; 중대 주제와 공시 항목 간 연계 비일관성 확인

3.3. ISSB(IFRS S1-S2)의 중대성 평가 체계

3.3.1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ISSB의 IFRS S1(2023)은 재무적 중대성을 기반으로 한다. IFRS S1은 정보의 누락·부정확한 기재·불투명한 기재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투자자·대출자·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중대하다고 규정한다(IFRS Foundation, 2023). 이는 IASB의 전통적 재무 중대성 개념을 지속가능성 정보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주된 정보 수신자를 명확히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투자자·대출자·기타 채권자-로 한정한다.

ISSB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단기·중기·장기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에 어떠한 위험과 기회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관점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 내부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ISSB의 중대성은 GRI와 달리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는 직접적인 판별 기준이 되지 않는다(IFRS Foundation, 2023).

이론적 기반에서 ISSB는 재무회계의 의사결정 유용성(decision usefulness)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 공시에 적용한 것으로, GRI의 영향 중대성과는 철학적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Nobes, 2025). GRI가 기업의 외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중심에 두는 반면, ISSB는 외부 세계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두 기준의 중대성 개념은 방향성 자체가 역전되어 있다(Nobes, 2025; Oll et al., 2025).

기업 관점에서 ISSB의 재무적 중대성은 판별 기준이 투자자의 의사결정 관련성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GRI에 비해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GRI와 ISSB를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은 동일한 이슈에 대해 두 기준이 상이한 중대성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구조적 긴장에 직면한다(Nobes, 2025; Oll et al., 2025).

3.3.2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IFRS S1은 중대성 평가의 구체적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기보다 원칙 중심으로 기술하며 기업의 재량에 위임한다(IFRS Foundation, 2023).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식별, 재무적 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평가, 투자자 의사결정 관련성 판단, 공시 항목 결정의 순서를 따르며, 산업별 특성 반영을 위해 SASB Standards 활용을 권고한다.

GRI와 비교할 때 ISSB의 평가 절차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GRI가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영향 목록을 구성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취하는 반면, ISSB는 재무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을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산업별 표준(SASB)을 참조점으로 삼는 하향식(top-down) 접근에 가깝다(Oll et al., 2025). 이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 두 기준이 상이한 중대성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관점에서 ISSB의 원칙 중심 접근은 유연하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관련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실무적 한계가 있다(Nobes, 2025; 정도진, 2025). 기존 GRI 중심의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이 ISSB 기반 중대성 판별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두 기준의 판별 논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이슈를 어떤 기준으로 먼저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Oll et al., 2025).

3.3.3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ISSB 는 세 기준 중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이 가장 제한적이다. IFRS S1 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대성 평가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지 않으며, 중대성 판단의 기준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아닌 주요 이용자·투자자·대출자·채권자·의 의사결정 관련성에 둔다(IFRS Foundation, 2023). GRI 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요구하고 CSRD/ESRS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IRO 식별 과정에 통합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ISSB 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식 절차 요건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Garst et al.(2022)이 논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대성 평가의 정당성과 품질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ISSB 의 접근은 이해관계자 정당성보다 시장 관련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선택을 반영한다.

GRI 와 ISSB 를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은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대성을 판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참여 논리는 동일한 이슈에 대해 상이한 중대성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일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형성한다(Garst et al., 2022; Oll et al., 2025).

3.3.4 공시 연계 구조

ISSB 의 공시 연계 구조는 세 기준 중 재무보고 체계와의 통합 수준이 가장 높다. IFRS S1 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위치시키며, IFRS S2 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를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한다(IFRS Foundation, 2023). 이 구조는 중대성 평가 결과가 각 영역의 공시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GRI 에 비해 공시 항목의 구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별된 이슈만이 공시 대상이 되므로, GRI 의 중대 주제 목록과 ISSB 의 공시 항목 간에는 범위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정도진(2025)이 지적한 바와 같이 ISSB 의 재무적 중대성 편향은 비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공시에서 누락될 위험을 내포하며, GRI 와 병행 이행 시 두 기준의 공시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실무적 과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ISSB 공시는 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재무팀과 지속가능성팀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정도진, 2025), 이는 GRI 중심의 기존 체계와 다른 내부 프로세스와 데이터 인프라를 전제한다.

3.3.5 KSSB 기준의 ISSB 대비 특수성

KSSB 는 ISSB 의 IFRS S1·S2 를 근간으로 하되, 국내 수용가능성을 반영한 제도적 조정을 포함한다(한국회계기준원, 2026). 2026 년 2 월 최종 의결된 공시기준서 제 1 호(일반사항)와 제 2 호(기후 관련 공시)는 ISSB 와 동일한 4 대 핵심요소(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를 채택하면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ISSB 원안과 차별화된다.

첫째, 적용 범위와 도입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ISSB 가 각국 재량에 맡기는 글로벌 기준선인 반면, KSSB 는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안)」과 연동하여 2028 사업연도 연결자산총액 30 조 원 이상(약 58 개사)을 시작으로, 2029 사업연도 10 조 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6). 둘째, 경과규정이 ISSB 보다 완화된 상태이다. 기후 외 지속가능성 사안의 공시를 선택 사항으로 허용하고, Scope 3 공시 유예 기간을 ISSB 의 1 년에서 3 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입 초기 추정·예측 정보에 대한 면책과 계도 중심 운영을 명시하였다(금융위원회, 2026;

한국회계기준원, 2026). 셋째, ISSB 가 정의하지 않는 시간 지평을 단기 1 년·중기 1~5년·장기 5년 이후로 구체화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한국회계기준원, 2026).

그러나 중대성 개념에서 KSSB 는 ISSB 와 동일하게 재무적 중대성만을 채택하고 있어, 3.3.1~3.3.4 절에서 도출한 ISSB 의 분석 결과가 KSSB 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한국거래소(2025)의 실태 조사에서 국내 보고 기업의 99.5%가 GRI 를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KSSB 의무공시 도입은 기존 영향 중대성 기반 체계에서 재무적 중대성 기반 체계로의 방법론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GRI·CSRD/ESRS 와의 동시 이행이라는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이 한국 기업에게 더욱 실질적인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명제(4.2 절)와 KSSB 의 관계, 그리고 KSSB 세부 조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표 4. ISSB(IFRS S1·S2) 중대성 평가 체계 분석 요약

분석 차원	핵심 내용	이론적 근거	기업 실무상 합의
①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재무적 중대성 - 투자자·채권자의 의사결정 관련성 중심; 아웃사이드-인 관점	의사결정 유용성 패러다임(IASB, 2018); Nobes(2025); Oll et al.(2025)	GRI 와 중대성 방향성 역전 → 동일 이슈에 대한 이중 판별 필요; 구조적 긴장 발생
②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원칙 중심 4 단계(IFRS S1·S2); SASB 산업별 기준 활용 권고; 하향식(top-down) 접근	Oll et al.(2025)	GRI 상향식 접근과 구조적 충돌; 판별 기준 불명확 → 방법론적 혼란 가능(Nobes, 2025; 정도진, 2025)
③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비필수; 주요 이용자(투자자·채권자) 관점 중심	IFRS Foundation(2023); Garst et al.(2022); Oll et al.(2025)	GRI 의 광범위한 참여 요건과 병존 어려움 → 단일 참여 설계로 동시 충족 불가
④ 공시 연계 구조	일반목적재무보고와 통합;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4영역 구조화(IFRS S1·S2)	IFRS Foundation(2023); Oll et al.(2025)	재무탐-지속가능성탐 협업 필수; GRI 공시 범위와 불일치 → 조직 내부 구조적 변화 수반(정도진, 2025)

3.4. CSRD/ESRS 의 중대성 평가 체계

3.4.1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EU CSRD(2022/2464)와 ESRS 는 '이중 중대성'을 의무적 평가 원칙으로 채택한다. 이중 중대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영향 중대성은 기업 활동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둘째, 재무적 중대성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ESRS 1 에 따르면 두 축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슈는 공시 대상이 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이중 중대성은 GRI 의 영향 중대성과 ISSB 의 재무적 중대성을 'OR 논리'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세 기준 중 가장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한다. GRI 역시 가치사슬 포함을 권고하나 범위 설정과 방법론은 기업 재량에 위임되는 반면, CSRD/ESRS 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전체를 의무적 평가 범위로 명시하고 EFRAG 지침을 통해 영향 식별 방법론을 구체화하며 제 3 자 인증을 법적으로 요구한다(Baumüller & Sopp, 2022). 이는 GRI 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영향 중대성을 포함하면서도 평가 범위의 강제성·방법론적 구체성·검증 구속력에서 GRI 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적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GRI 기반의 영향 중대성 평가 결과를 CSRD/ESRS 의 이중 중대성 평가에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GRI 와 CSRD/ESRS 를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은

양자 간의 방법론적 간극을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Baumüller & Sopp, 2022; Oll et al., 2025).

이중 중대성의 이론적 기반은 재무적 중대성만으로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Baumüller & Sopp(2022)가 논증한 바와 같이 이 인식이 NFRD에서 CSRD로의 전환 과정에서 EU 차원의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였으며, 그 결과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의 통합이 의무적 보고 원칙으로 제도화되었다. Oll et al.(2025)은 나아가 이중 중대성이 두 관점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동태적 상호작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즉 오늘의 영향 중대성 이슈가 미래의 재무적 중대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세 기준 중 이론적으로 가장 복잡한 중대성 개념임을 지적한다.

3.4.2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EFRAG의 ESRS 적용지침에 따르면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이하 DMA) 프로세스는 맥락 및 이해관계자 파악, IRO(영향·위험·기회) 목록 작성, 영향 중대성 평가, 재무적 중대성 평가, 중대이슈 목록 최종화 및 공시의 5 단계로 구성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이경창·이유경, 2024).

GRI·ISSB의 4 단계와 비교할 때 CSRD/ESRS의 5 단계 프로세스는 두 가지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 첫째, IRO 목록 작성 단계를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 평가가 공통된 이슈 목록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두 축의 평가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진행되어 통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둘째, ESRS는 중대성 임계값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여, 방법론과 임계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GRI에 비해 절차적 명확성이 높다(Padilla-Garrido et al., 2024).

그러나 5 단계 프로세스의 복잡성은 실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IRO를 동시에 식별해야 하는 요건은 공급망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 기업에게 상당한 정보 수집 비용을 야기한다. 이경창·이유경(2024)이 글로벌 철강사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절차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기업 특성에 따라 DMA 이행 방식에 상당한 이질성이 나타난다. 기존 GRI 기반 중대성 평가를 수행해 온 기업이 CSRD/ESRS의 DMA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GRI의 영향 식별 결과를 IRO 목록 작성에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실무 판단 지점이 된다(Baumüller & Sopp, 2022; 이경창·이유경, 2024).

3.4.3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CSRD/ESRS는 세 기준 중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이 가장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다. ESRS는 이해관계자를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와 '정보 이용자(Users of Sustainability Statements)'로 명시적으로 구분하며, IRO 식별 및 영향 중대성 평가 단계에서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를 핵심 절차로 규정한다(European Commission, 2022).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를 참여 대상으로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Mezzanotte, 2023) 단순 권고를 넘어서는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

GRI와 비교하면 참여 방식과 강도를 기업 재량에 위임하는 GRI와 달리 CSRD/ESRS는 이해관계자 유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참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ISSB와 비교하면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식 절차 요건으로 포함하지 않는 ISSB와 달리 CSRD/ESRS는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행 부담이 가장 크다. Garst et al.(2022)이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대성 평가의 정당성과 품질을 결정한다고 논한 관점에서 보면, CSRD/ESRS는 세 기준 중 정당성 확보 요건이 가장 높은 체계라 할 수 있다.

기업 관점에서 GRI와 CSRD/ESRS의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는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공통되나, 참여 범위의 강제성과 방법론의 구체화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GRI의 참여 프로세스가 CSRD/ESRS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 부분적 중복과 차이가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에게 통합적 이해관계자 참여 설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Baumüller & Sopp, 2022; Oll et al., 2025).

3.4.4 공시 연계 구조

CSRD/ESRS 의 공시 연계 구조는 세 기준 중 가장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DMA 결과는 ESRS 의 토픽별 공시 기준(ESRS E1~E5, S1~S4, G1)과 직접 연계되며, 중대하다고 판별된 이슈에 대해서만 해당 토픽 기준의 공시 요건이 적용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중대성 평가 결과가 공시 의무의 범위를 직접 결정하고 법적 강제성과 제 3 자 인증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GRI 의 형식-실질 괴리 문제(이용훈·홍철규, 2023)는 구조적으로 억제되며 ISSB 의 재무보고 통합 구조와도 차별화된다(Mezzanotte, 2023).

기업 관점에서 CSRD/ESRS 공시 연계 구조의 핵심 함의는 중대성 평가 결과가 법적 공시 의무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의 엄밀성과 문서화 요구 수준을 GRI·ISSB 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인다. 특히 GRI 의 중대 주제 목록, ISSB 의 재무적 위험·기회 목록, CSRD/ESRS 의 IRO 목록은 각각 상이한 판별 논리에서 도출되므로, 세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은 공시 항목 간의 중복과 충돌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공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Baumüller & Sopp, 2022; Mezzanotte, 2023).

표 5. CSRD/ESRS 중대성 평가 체계 분석 요약

분석 차원	핵심 내용	이론적 근거	GRI · ISSB 와의 핵심 차이	기업 실무상 함의
①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이중 중대성(OR 논리); 가치사슬 전체 의무적 범위; 법적 강제성·제 3 자 인증 수반	Baumüller & Sopp(2022); Oll et al.(2025)	GRI 도 가치사슬 포함하나 재량 허용; CSRD/ESRS 는 범위·방법론·검증 모두 강제	GRI 영향 평가 결과 직접 이식 불가; 방법론적 간극 별도 설계 필요
②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5단계 DMA(ESRS 1); IRO 공통 출발점; 심각성 측정 방법론·임계값 지침 구체화	European Commission(2022); Padilla-Garrido et al.(2024); 이경창·이유경(2024)	GRI 보다 절차적 완결성·명확성 높음; GRI 와 심각성 기준 공유하나 측정방법 구체화 수준 차이	가장 높은 이행 비용; GRI 영향 식별 결과 활용 범위 판단 필요
③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이해관계자 유형 명시 구분; 가치사슬 전반 참여 강력 권고; 미이행 시 법적 위험 수반	European Commission(2022); Garst et al.(2022); Mezzanotte(2023)	GRI 와 참여 대상 부분 중복; 참여 범위 강제성·방식 구체화 수준에서 근본적 차이	GRI 참여 구조와 부분적 통합 가능; 가치사슬 범위 강제성 차이로 완전 충족 불가
④ 공시 연계 구조	DMA 결과→토픽별 ESRS 기준 적용; 법적 공시 의무 근거; 제3 자 인증	European Commission(2022); Baum ü ller & Sopp(2022); Mezzanotte(2023)	GRI 형식-실질 괴리를 법적 강제성으로 억제(이용훈·홍철규, 2023); ISSB 보다 지속가능성 보고 내 구조화 강조	세 기준 IRO 목록 간 중복·충돌 사전 조율 필수; 평가 엄밀성·문서화 요구 수준 최고

4. 기준 간 중대성 평가 체계의 비교 종합 분석

세 기준은 중대성의 관점과 목적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GRI 는 인사이드-아웃(Inside-Out) 논리에 기반한 영향 중대성을, ISSB 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논리에 기반한 재무적 중대성을 채택하며, CSRD/ESRS 는 이 두 논리를 OR 구조로 통합한 이중 중대성을 채택함으로써 세 기준 중 가장 광범위한 공시 범위를 요구한다. 특히 GRI 와 CSRD/ESRS 가 모두 영향 중대성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GRI 의 영향 중대성이 자율적·재량적 구조인 반면 CSRD/ESRS 의 그것은

법적 강제성과 제 3 자 인증을 수반하는 구속적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ISSB 의 재무적 중대성과 CSRD/ESRS 의 재무적 중대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CSRD/ESRS 가 영향 중대성과의 통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운용 방식이 다르다(Nobes, 2025; Oll et al., 2025).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세 기준으로부터 상이한 중대성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GRI 와 CSRD/ESRS 에서는 중대하나 ISSB 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기후 전환 위험과 같이 재무적으로 중요하나 단기적 환경 영향이 불명확한 이슈는 ISSB 에서는 중대하나 GRI 의 영향 중대성 판별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판별 결과의 이질성이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긴장의 원천이 된다(Nobes, 2025; Oll et al., 2025).

이하에서는 3 장의 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기준을 동일한 차원에서 횡단 비교함으로써 기준 간 공통 기반과 구조적 차별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을 위한 이론적 명제를 도출한다.

4.1. 기준 간 중대성 개념의 구조적 관계

첫째, 영향 중대성(인사이드-아웃)과 재무적 중대성(아웃사이드-인)은 방향성이 역전된 관계에 있다(Nobes, 2025; Baumüller & Sopp, 2022). 이 역전은 추상적 개념 차이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이슈에 대해 기준별로 상이한 중대성 판단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예컨대 탄소 배출이 인근 지역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GRI 와 CSRD/ESRS 에서는 중대하나 ISSB 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위험은 ISSB 에서는 중대하나 GRI 의 영향 중대성 판별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 이 구조적 이질성이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에게 방법론적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Nobes, 2025; Oll et al., 2025; 정도진, 2025).

둘째, 이중 중대성은 이 두 축을 ‘OR 논리’로 통합한 개념으로, 영향 중대성 이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적 중대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동태적 연계를 내재한다. 이른바 “동태적 중대성(Dynamic Materiality)”의 개념이 이 전환 가능성을 이론화한 것으로(World Economic Forum, 2020), 이중 중대성이 두 축의 정적 통합이 아닌 동태적 구조임을 시사한다.

셋째, GRI 와 CSRD/ESRS 의 영향 중대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제도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GRI 는 자율적·재량적 구조인 반면 CSRD/ESRS 는 법적 강제성·구체적 방법론·제 3 자 인증을 수반하는 구속적 구조로, GRI 의 영향 중대성 평가 결과가 CSRD/ESRS 의 DMA 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며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ISSB 의 재무적 중대성과 CSRD/ESRS 의 재무적 중대성도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CSRD/ESRS 가 영향 중대성과의 통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운용 방식이 다르다.

넷째, 세 기준의 평가 프로세스는 출발 질문 자체가 다르다. GRI 는 "기업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인 반면, ISSB 는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가 기업 가치에 위험 또는 기회를 초래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접근이다. CSRD/ESRS 의 IRO 목록 작성은 이 두 접근을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이나, GRI 의 영향 식별은 가치사슬 포함 범위가 재량에 맡겨진 반면 CSRD/ESRS 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전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동일한 심각성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방법론의 구체화 수준이 달라 GRI 결과를 이식할 경우 범위와 엄밀성 모두에서 간극이 발생한다(Padilla-Garrido et al., 2024; 이용훈·홍철규, 2023).

다섯째,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에서 GRI 와 CSRD/ESRS 는 이해관계자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ISSB 는 시장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다(Garst et al., 2022; IFRS Foundation, 2023). 이 이원화된 참여 논리는 단일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공시 연계 구조에서 GRI 의 중대 주제 목록, ISSB 의 재무적 위험·기회 목록, CSRD/ESRS 의 IRO 목록은 각각 상이한 판별 논리에서 도출되므로, 동일한

기업에 대해 세 기준이 서로 다른 공시 항목 집합을 요구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GRI 기준 하에서 중대성 평가를 수행했다고 공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공시 항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실질 괴리(이용훈·홍철규, 2023)는, CSRD/ESRS의 법적 강제성과 제 3자 인증으로 억제되나 세 기준 공시 항목 간 중복과 충돌의 사전 조율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수반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세 기준의 이질성은 개념의 위계, 프로세스의 이질성, 참여 논리의 이원화, 공시 항목의 불일치라는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며, 이것이 다음 절에서 도출하는 이론적 명제들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4.2. 통합적 중대성 평가 접근을 위한 이론적 명제 도출

앞 절의 구조적 관계 분석으로부터 복수 기준 동시 이행 환경에서의 통합적 중대성 평가 접근에 관한 다음의 이론적 명제들이 도출된다.

명제 1. 영향 중대성은 복수 기준 통합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영향 중대성은 세 기준 중 가장 광범위한 이슈 식별을 가능하게 하며, 재무적 중대성의 선행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구성된 이슈 풀은 재무적 중대성 판별을 위한 선행 목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중 중대성의 영향 충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토대가 된다. GRI(2024)는 영향 중대성 기반의 평가가 이중 중대성 대응에 유리한 시퀀싱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영향 중대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순차적 접근이 복수 기준 동시 이행 환경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단, 이 명제는 출발점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GRI의 자율적 영향 중대성 평가가 CSRD/ESRS의 강제적 DMA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명제 2. GRI의 영향 중대성 평가는 CSRD/ESRS의 DMA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며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GRI와 CSRD/ESRS의 영향 중대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세 가지 제도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평가 범위에서 GRI는 가치사슬 포함 여부를 기업 재량에 맡기는 반면 CSRD/ESRS는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전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둘째, 방법론의 구체성에서 GRI는 심각성의 세 하위 기준(규모·범위·회복불가능성)을 제시하나 측정 방법을 기업 재량에 위임하는 반면, CSRD/ESRS는 EFRAG 지침을 통해 구체적 측정 방법론을 제시한다. 셋째, 검증의 구속력에서 GRI는 자율 공시로 실질적 검증 의무가 없는 반면 CSRD/ESRS는 제3자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따라서 GRI 기반의 영향 중대성 평가 결과는 CSRD/ESRS의 IRO 목록 작성에 부분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방법론적 보완이 불가피하며,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은 이 방법론적 간극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설계해야 한다(Baumüller & Sopp, 2022; Oll et al., 2025).

명제 3. 단일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중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GRI와 CSRD/ESRS는 이해관계자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ISSB는 시장 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단일 프로세스로의 통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은 참여 논리의 이원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두 논리를 별도 층위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GRI-CSRD/ESRS 요건의 공통 기반으로 설계하고, 투자자·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적 관련성 판단은 ISSB 요건의 별도 층위로 운용하는 이중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Garst et al., 2022; IFRS Foundation, 2023).

명제 4. 공시 연계 구조의 통합은 가장 구속력이 높은 CSRD/ESRS를 준거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세 기준의 공시 연계 구조 중 CSRD/ESRS 가 법적 강제성과 제 3 자 인증을 수반하는 가장 구속력이 높은 기준이다.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이 CSRD/ESRS 의 DMA 결과와 토픽별 공시 기준을 준거점으로 삼고, GRI 의 중대 주제 목록 및 ISSB 의 재무적 위험·기회 목록과의 정합성을 역방향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이론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는 공시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세 기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설계 원리를 제공한다(이용훈·홍철규, 2023; Baumüller & Sopp, 2022).

4.3. 중대성 평가 기준 간 체계적 비교

이상의 네 가지 이론적 명제는 앞 절의 구조적 관계 분석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명제 1 이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의 출발점을, 명제 2 가 그 출발점의 한계를, 명제 3·4 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공시 체계 설계의 원리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전 과정에 걸친 이론적 지침을 구성한다.

<표 6>는 III장의 개별 분석과 본 장의 비교 종합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마지막 행에서 각 기준이 이론적 명제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명시하였다.

표 6. 중대성 평가 체계 비교 종합

분석 차원	세부 항목	GRI Standards(2021)	ISSB(IFRS S1 · S2)	CSRD/ESRS
①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중대성 유형	영향 중대성	재무적 중대성	이중 중대성(CR 논리)
	정보 수신자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 종업원 · 시민사회 등)	주요 이용자(투자자 · 대출자 · 채권자)	이해관계자 + 정보 이용자
	관점	인사이드-아웃	아웃사이드-인	양방향 통합
	이론적 기반	이해관계자 이론(Freeman, 1984); 정당성 이론(Suchman, 1995)	의사결정 유용성 패러다임(IASB, 2018)	이중 중대성 이론(Baumüller & Sopp, 2022; Oll et al., 2025)
	법적 강제성	없음(자율 공시)	국가별 의무화 추진 중(ISSB 2028~)	있음(EU 법적 의무)
②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평가 단계	4 단계	4 단계	5 단계(DMA)
	평가 출발점	영향 식별(상향식)	위험 · 기회 식별(하향식)	IRO 목록 작성(영향·위험 · 기회 통합)
	핵심 판별 기준	심각성(규모 · 범위 · 회복불가능성) + 발생가능성	재무적 영향의 크기 + 발생가능성	영향, 재무 각각 평가후 CR 판정
	방법론 명확성	중간(판별 기준 제시, 측정방법 · 임계값 재량)	낮음(원칙 중심, 재량 큼)	높음(EFRAG 지침으로 측정방법 · 임계값 구체화)
	가치사슬 범위	권고(포함 범위 재량)	주요 기업 경제 내부	의무(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강제)
③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참여 주체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 종업원 · NGO 등)	사실상 투자자 · 채권자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 + 정보 이용자(명시적 구분)
	참여 방식	실질적 참여 권고(방식 · 강도 재량)	비필수(공식 절차 요건 없음)	강력 권고; 미이행 시 법적 위험 수반(유형별 요건 구체화)
	정당성 기반	이해관계자 정당성	시장 관련성	이해관계자 정당성 + 시장 관련성
④ 공시 연계 구조	강제성 수준	낮음(자율)	없음	높음(법적 의무)
	연계 메커니즘	중대 주제-GRI Topic Standard 적용→ 콘텐츠 인덱스	재무적 위험 · 기회→일반목적 재무보고 통합(4 대 영역)	DMA 결과→토픽별 ESRS 기준 적용(E1-E5, S1-S4, G1)
	연계 구속력	낮음(자율적; 형식·실질 괴리 위험)	중간(재무보고 체계 내 제도적 연계)	높음(법적 강제; 제3 자 인증)

	재무보고 통합	없음	높음(재무제표 일관성 요구)	낮음(지속가능성 보고 내 구조화 중심)
	핵심 실무 과제	형식·실질 괴리 최소화; 영향 중대성 실질적 내재화	GRI 와 판별 논리 충돌 조율; 재무·지속가능성팀 협업	세 기준 공시목록 간 중복·충돌 사전 조율
이론적 명제와의 연계		명제 1(영향 중대성은 통합의 출발점); 명제 2(GRI 의 영향평가는 CSRD/ESRS DMA 를 부분충족)	명제 1(영향·재무 중대성의 방향성 역전); 명제 3(참여 논리 이원화로 이중 구조 설계)	명제 2(GRI 영향 평가의 DMA 대체 불가); 명제 4(공시 통합의 준거점 기준)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GRI Standards(2021), ISSB(IFRS S1·S2), CSRD/ESRS 의 중대성 평가 체계를 중대성의 관점 및 목적, 평가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공시 연계 구조의 네 가지 분석 차원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명제를 도출하였다.

3 장의 개별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GRI 는 인사이드-아웃 논리에 기반한 영향 중대성을 채택하고 있으나 방법론과 임계값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고 가치사슬 범위 설정이 기업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형식적 수행에 그칠 위험이 있다. ISSB 는 아웃사이드-인 논리에 기반한 재무적 중대성을 채택하며, 원칙 중심 접근으로 재량의 여지가 크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식 절차로 요구하지 않아 세 기준 중 참여 요건이 가장 제한적이다. CSRD/ESRS 는 이중 중대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며 세 기준 중 가장 높은 절차적 완결성과 공시 연계 구속력을 갖추고 있으나, GRI 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영향 중대성을 포함함에도 평가 범위의 강제성·방법론의 구체성·제 3 자 인증의 법적 의무화에서 GRI 와 제도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4 장의 비교 종합 분석에서는 세 기준의 중대성 개념이 단순 병렬 관계가 아니라 이론적 위계와 포함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중 중대성이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을 ‘OR 논리’로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나, 이 위계는 상위 기준이 하위 기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 기준의 평가 프로세스·이해관계자 참여 논리·공시 연계 구조 모두에서 단일한 통합이 불가능한 구조적 긴장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네 가지 이론적 명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영향 중대성은 복수 기준 통합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둘째, GRI 의 영향 중대성 평가는 CSRD/ESRS 의 DMA 를 부분적으로만 충족하며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단일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원적 층위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공시 연계 구조의 통합은 가장 구속력이 높은 CSRD/ESRS 를 준거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2.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한다.

첫째, 기존 연구가 개별 기준의 중대성 개념을 분석하거나 단일 기준 하의 공시품질을 실증하는 데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세 기준의 중대성 개념 간 구조적 위계와 포함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중대성 개념의 삼분화—영향 중대성·재무적 중대성·이중 중대성—가 단순한 용어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 출발점과 제도적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됨을 논증한 것으로, 중대성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Nobes, 2025; Baumüller & Sopp, 2022; Oll et al., 2025). 특히 GRI 와 CSRD/ESRS 의 영향 중대성이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제도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논증한 것은, 두 기준을 동일시하거나 단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기존의 논의에 이론적 수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이라는 새로운 연구 맥락을 설정하고, 이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을 네 가지 분석 차원에 걸쳐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가 복수 기준 간 차이를 기술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그 차이가 기업의 중대성 평가 설계에 어떠한 이론적 딜레마를 야기하는가를 명제의 형태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이용훈·홍철규, 2023; Padilla-Garrido et al., 2024; Oll et al., 2025).

셋째, 도출된 네 가지 이론적 명제는 향후 실증 연구의 가설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명제 1에서 제시된 영향 중대성의 선행 조건 기능, 명제 2에서 제시된 GRI와 CSRD/ESRS 간 방법론적 간극의 존재, 명제 3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참여 논리의 이원화, 명제 4에서 제시된 CSRD/ESRS 준거점 설계 원리는 향후 기업 수준의 실증 데이터—중대성 평가 보고서의 콘텐츠 분석, 기업 담당자 심층 인터뷰,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의 공시 패턴 분석 등—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연구 가설로 구체화될 수 있다.

5.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한국 기업의 ESG 공시 환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명제 1의 이론적 함의에 따르면 GRI 기반의 영향 중대성 평가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이를 KSSB 대응을 위한 재무적 중대성 판별의 선행 작업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2025)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GRI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GRI 기반의 영향 중대성 평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KSSB와 CSRD/ESRS 대응을 순차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며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이다. 특히 3.3.5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KSSB가 Scope 3 공시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자산 규모별 단계적 도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GRI 기반 영향 중대성 평가를 유지하면서 KSSB 적용 시점에 맞추어 재무적 중대성 판별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명제 2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GRI 영향 중대성 평가 결과를 CSRD/ESRS의 DMA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는 평가 범위·방법론·검증 요건의 간극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다. EU 수출 기업이나 EU 소재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GRI 기반 평가와 CSRD/ESRS의 DMA 요건 간의 간극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완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 간극을 인식하지 못한 채 GRI 결과를 CSRD/ESRS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적 공시 의무 미충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명제 3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참여 논리의 이원화는 국내 기업의 현실적 과제와 직결된다. 단일 프로세스로 복수 기준을 충족하려는 시도는 구조적 비효율을 야기한다.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GRI-CSRD/ESRS 요건의 공통 기반으로 설계하는 한편, 투자자·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적 관련성 판단은 ISSB(KSSB) 요건의 별도 층위로 운용하는 이중 구조의 참여 설계를 채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더 적합하다.

넷째, 명제 4에 따라 복수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업은 CSRD/ESRS의 DMA 결과와 토픽별 공시 기준을 준거점으로 삼고 GRI 및 ISSB(KSSB)와의 정합성을 역방향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시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CSRD/ESRS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 기업도 EU 공급망 규제의 확산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 증가를 고려할 때, 가장 구속력이 높은 기준을 준거점으로 공시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접근임을 시사한다.

5.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규범 비교 분석에 기반하므로, 도출된 이론적 명제들이 실제 기업의 중대성 평가 실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도출된 명제들은 이론적 논증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기업 수준의 실증 데이터—중대성 평가 보고서의 콘텐츠 분석, 기업 담당자 심층 인터뷰, 복수 기준 동시 이행 기업의 공시 패턴 분석 등—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대상 기준이 GRI-ISSB-CSR/ESRS 세 기준에 한정되어 있다. KSSB 최종안,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준들이 본 연구의 비교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KSSB 는 ISSB 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내 규제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명제들이 KSSB 맥락에서 어떻게 수정·보완되어야 하는가가 후속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준들은 모두 현재도 개정이 진행 중이다. GRI 는 Topic Standard 개정 프로젝트를, CSR/ESRS 는 적용 범위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ISSB 역시 추가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향후 기준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ESG 공시기준 연구 분야가 갖는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다.

넷째, 본 연구는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이라는 맥락을 일반적 수준에서 논의하였으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중대성 평가의 설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경창·이유경(2024)과 김승철(2025)이 산업별 적용의 차별성을 규명한 바와 같이,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산업 또는 기업 유형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명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수 기준 동시 이행이라는 새로운 연구 맥락을 정립하고, 세 기준의 중대성 개념 간 구조적 위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며, 향후 실증 연구의 토대가 될 이론적 명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References

【국내 문헌】

- 금융위원회. (2023).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 ESG 공시 로드맵(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2.25.).
- 김승철. (2025). 글로벌 항만공사 중대성 평가 분석을 통한 한국 항만공기업 ESG 지표 개선 연구. 『국제상학』, 40(4), 89-114. <https://doi.org/10.18104/kalc.2025.40.4.89>
- 이경창·이유경. (2024). 이중 중대성 평가와 ESG 경영: 글로벌 철강사 비교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4(3), 139-154. <https://doi.org/10.29331/JKRAIC.2024.4.24.3.139>
- 이용훈·홍철규. (2023).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대성 공시품질 연구. 『관리회계연구』, 23(3), 69-100. <https://doi.org/10.31507/KJMAR.2023.12.23.3.69>
- 이용훈·홍철규. (2024). 기업 특성이 ESG 보고의 중대성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환경, 제도 및 재무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24(2), 123-166. <https://doi.org/10.31507/KJMAR.2024.8.24.2.123>
- 정도진. (2025).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와 회계정보 유용성: ISSB 기준의 한계와 국내 ESG 공시제도의 대응 방향. 『회계정보연구』, 43(4), 179-201. <https://doi.org/10.29189/KAIAAIR.43.4.8>
- 한국거래소. (2025). 2024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25.1.9.).
- 한국회계기준원. (2026).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한국회계기준원.
- 황성익. (2023). ESG 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EU 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법연구』, 45(2). <https://doi.org/10.35769/elr.2023.45.2.004>

【외국 문헌】

- Adams, C. A., Druckman, P. B., & Picot, R. C.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Disclosure (SDGD) Recommendations*. ACCA, Chartered Accountants ANZ, ICAS, IFAC, IIRC & WBA.
- Baumüller, J., & Sopp, K. (2022). Double materiality and the shift from non-financial to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Review, outlook and im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Accounting Research*, 23(1), 8-28. <https://doi.org/10.1108/JAAR-04-2021-0114>

- European Commission. (2022). *Directive 2022/246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Freeman, R. E.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Pitman Publishing.
- Garst, J., Maas, K., & Suijs, J. (2022). Materiality assessment is an art, not a science: Selecting ESG topics for sustainability report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65(1), 64-90. <https://doi.org/10.1177/00081256221120692>
- GRI. (2021).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https://www.globalreporting.org>
- GRI. (2024). *Double materiality: The guiding principle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 <https://www.globalreporting.org/media/rz1jf4bz/gri-double-materiality-final.pdf>
- IASB. (2018).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FRS Foundation. (2023a).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FRS Foundation. (2023b).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Mezzanotte, F. E. (2023).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ouble materiality, impacts, and legal risk.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23(2), 633-663. <https://doi.org/10.1080/14735970.2024.2319058>
- Nobes, C. (2025). From no materiality to double materiality: A long-run conceptual analysis of corporate reporting regulation.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55(5), 41-68. <https://doi.org/10.1080/00014788.2025.2579303>
- Oll, J., Spandel, T., Schiemann, F., & Akkermann, J. (2025). The concept of materiality in sustainability reporting: From essential contestation to research opportunities. *Sustainability Accounting, Management and Policy Journal*, 16(2), 321-350. <https://doi.org/10.1108/SAMPJ-03-2024-0296>
- Padilla-Garrido, N., Aguado-Correa, F., Rabadán-Martín, I., López-Jiménez, J. M., de la Vega-Jiménez, J. J., & Peletier-Ribera, I. (2024). Materiality analysi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Insights from large Spanish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31(6), 5391-5412. <https://doi.org/10.1002/csr.2866>
- Suchman, M.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https://doi.org/10.2307/258788>
- World Economic Forum. (2020). *Embracing the new age of materiality: Harnessing the pace of change in ESG*. World Economic Forum.